|  |  |  |
| --- | --- | --- |
| **개인세수거치형 상업양로보험 시범 전개에 관한 통지**  재세[2018]22호  상해시, 강소성, 복건성, 하문시 재정청(국), 지방 세무국,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은감국, 증감국, 보감국: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여 실행하고, 다차원적인 연금보험체계 건설을 추진하며 연금보험 제3의 버팀목에 대한 유익한 탐색을 위하여, 이에 개인세수거치형 상업연금보험 시범 전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시범정책에 관하여  1.1 시범지역 및 기간  2018년 5월 1일부터 상해시, 복건성(하문시 포함) 및 소주산업단지에서 개인세수거치형 상업연금보험 시범을 실시한다. 시범기간은 1년으로 잠정적으로 정한다.  1.2 시범정책 내용  시범지역의 개인이 개인상업연금 자금계좌로 규정에 부합한 상업연금보험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지출은 일정한 기준 내에서 세전공제할 수 있다. 개인상업연금 자금계좌에 산입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으며, 개인이 상업연금을 수령할 때 다시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  1.2.1 개인납부 세전공제기준. 급여 및 연속성 노무수입을 취득한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당월 과세소득을 신고하여 공제할 때, 사실대로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액은 당월 월급, 연속성 노무수입의 6% 및 1,000위안 중의 최저액으로 확정한다. 자영업자의 생산경영소득 및 기업과 사업단위에 대한 도급임차경영소득을 취득한 자영업자 업주, 개인독자기업투자자, 합명기업의 자연인 파트너와 도급임차경영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당해 과세소득액을 신고하여 공제할 때, 사실대로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액은 당해 과세소득의 6% 및 12,000위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확정한다.  1.2.2 계좌자금수익은 잠정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상업연금 자금계좌에 산입된 투자수익은 납부 기간 내에 잠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1.2.3 개인이 상업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징수한다. 개인이 국가에서 규정한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한달 또는 일년에 한 번씩 상업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원칙상 수령기한은 평생 또는 15년 이상이다. 개인이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고도장해 또는 중대질병에 걸린 경우 상업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다.  개인이 규정조건에 도달하여 수령한 상업연금수익 중의 25%는 면세되고 나머지 75%는 1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며, 세금은 ‘기타소득’ 항목에 산입된다.  1.3 시범정책의 적용 대상  시범세수정책을 적용하는 납세자는 시범지역에서 급여와 연속성 노무수입을 취득하는 개인 및 자영업자 생산경영소득 및 기업과 사업단위에 대해 도급임차경영소득을 취득한 자영업자 업주,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합명기업의 자연인 파트너와 도급임차경영자를 가리킨다. 이들의 급여 및 연속성 노무수입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단위, 또는 자영업자, 도급임차단위, 개인독자기업, 합명기업의 실제 경영장소는 모두 시범지역 내에 있다.  연속성 노무수입 취득이란 납세자가 연속 6개월 이상(6개월 포함) 동일 단위에 노무를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을 가리킨다.  1.4 시범기간 개인상업연금계좌와 정보플랫폼  1.4.1 개인상업연금계좌는 납세자가 지정한 세수거치형 상업연금보험 납부, 수익 및 자금수령 등 기능이 집결된 상업은행 개인전용계좌이다. 이 계좌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주민등록증과 연동되어 유일한 성격을 지닌다.  1.4.2 시범기간 내에 중국보험정보기술관리유한회사가 구축한 정보플랫폼을 사용한다(이하 “중보신플랫폼”). 개인상업연금계좌는 중보신플랫폼에서 등기하여 그 유일성을 검증한다. 개인상업연금계좌가 변경될 때 은행은 중보신플랫폼의 검증을 받은 후 계정을 이월할 수 있으며, 1년에 한 번만 계정을 이월 할 수 있다. 중보신플랫폼은 세무시스템, 상업보험기구 및 상업은행과 결합하여 계좌관리, 정보검색, 세무감사 및 외부 관리감독 등 기초 서비스를 제공한다.  1.5 시범기간 상업연금보험상품 및 관리  개인상업연금보험상품은 온건형 상품을 위주로 하고, 리스크형 상품을 보조로 하는 원칙으로 선택하고 명부방식으로 확정한다. 시범기간 내의 상품은 보험회사가 개발하고 “수익안정, 장기고정, 평생수령, 정산균형”의 원칙에 부합되며 보험가입자의 연금계좌자금에 대한 안정성, 수익성과 장기적 관리요구를 충족시키는 상업연금보험상품이다. 구체적인 상업연금보험상품 지침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제출하고 상재정부, 인사부, 세무총국에서 발포한다.  1.6 시범기간 세수관리  1.6.1 세전공제납부. 개인이 규정에 부합된 상업연금보험상품을 구매하여 거치형 납세혜택을 향유할 때, 중보신플랫폼에서 제공한 세수거치형 연금공제증빙을 세금공제 근거로 한다. 월급, 급여소득과 연속성 노무수입을 취득한 개인은 적시에 관련 증빙을 원천징수단위에 제공해야 한다. 원천징수단위는 본 통지의 유관요구에 따라 개인세수거치형 상업연금보험 시범정책을 잘 관철시켜 납세자에게 세전공제 유관사항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개인이 시범지역 범위 내에서 두 곳 또는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을 취득할 경우, 그 중의 한 곳만을 선택하여 시범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1.6.2 상업연금 수령 시의 세금징수. 개인이 규정에 따라 상업연금을 수령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시범기간의 기타 관련 준비작업  시범기간 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증감회는 관련 준비작업을 잘 하고, 연금계좌 관리제도를 개선하며, 은행 및 공모펀드 종류의 상품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관련 금융기구의 상품개발을 지도한다. 중국증권등기결제유한회사플랫폼(이하 “중등회사플랫폼”)과 상업은행, 세무 등 정보시스템의 연결 준비작업을 잘 한다. 이와 동시에 인사부와 재정부의 주도하에 연합세무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증감회 등 단위를 연합하여 공동으로 제3의 버팀목제도와 관리서비스 정보플랫폼을 연구하여 구축한다.  시범이 끝난 후 시범 상황에 근거하여 연금보험 제3의 버팀목제도 건설의 유관상황을 결부시켜 순차적으로 참여 금융기구 및 상품범위를 확대하며, 공모펀드 등 상품을 개인상업연금계좌의 투자범위에 포함시켜, 상응하여 중등회사플랫폼을 정보플랫폼으로 삼고 중보신플랫폼과 동시 운영한다. 제3의 버팀목제도와 관리서비스 정보플랫폼이 구축된 후 중등회사플랫폼 및 중보신플랫폼을 제3의 버팀목제도 및 관리서비스 정보플랫폼과 결합시켜 연금보험의 제3의 버팀목에 대한 거시적 관리감독을 실현한다.  3. 부문 협업  3.1 정보플랫폼은 세무기관에게 개인세수거치형 상업연금보험의 유관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세무기관을 협조하여 관련 세금징수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3.2 보험회사가 개인세수거치형 상업연금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상업연금보험상품을 구매한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및 보험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상품명칭 및 납부금액 등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정보플랫폼과 실시간 연동하여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증해야 한다.  3.3 시범지역의 재정, 인사, 세무, 금융관리감독 등 관련 부문은 역할 분담을 잘 하고 밀접하게 협동하여 본 통지를 잘 조직하여 실행해야 한다. 또한 제때에 시범경험을 총결 및 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실시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과 문제는 제때에 재정, 인사부 및 세무총국과 금융관리감독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증감회  2018년 4월 2일 |  | **关于开展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试点的通知**  财税〔2018〕22号  上海市、江苏省、福建省、厦门市财政厅（局）、地方税务局、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银监局、证监局、保监局：    为贯彻落实党的十九大精神，推进多层次养老保险体系建设，对养老保险第三支柱进行有益探索，现就开展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试点有关问题通知如下：  　　一、关于试点政策  　　（一）试点地区及时间。  　　自2018年5月1日起，在上海市、福建省（含厦门市）和苏州工业园区实施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试点。试点期限暂定一年。  　　（二）试点政策内容。  　　对试点地区个人通过个人商业养老资金账户购买符合规定的商业养老保险产品的支出，允许在一定标准内税前扣除；计入个人商业养老资金账户的投资收益，暂不征收个人所得税；个人领取商业养老金时再征收个人所得税。具体规定如下：  　　1.个人缴费税前扣除标准。取得工资薪金、连续性劳务报酬所得的个人，其缴纳的保费准予在申报扣除当月计算应纳税所得额时予以限额据实扣除，扣除限额按照当月工资薪金、连续性劳务报酬收入的6%和1000元孰低办法确定。取得个体工商户生产经营所得、对企事业单位的承包承租经营所得的个体工商户业主、个人独资企业投资者、合伙企业自然人合伙人和承包承租经营者，其缴纳的保费准予在申报扣除当年计算应纳税所得额时予以限额据实扣除，扣除限额按照不超过当年应税收入的6%和12000元孰低办法确定。  　　2.账户资金收益暂不征税。计入个人商业养老资金账户的投资收益,在缴费期间暂不征收个人所得税。    3.个人领取商业养老金征税。个人达到国家规定的退休年龄时，可按月或按年领取商业养老金，领取期限原则上为终身或不少于15年。个人身故、发生保险合同约定的全残或罹患重大疾病的，可以一次性领取商业养老金。  　　对个人达到规定条件时领取的商业养老金收入，其中25%部分予以免税，其余75%部分按照10%的比例税率计算缴纳个人所得税，税款计入“其他所得”项目。  　　（三）试点政策适用对象。  　　适用试点税收政策的纳税人，是指在试点地区取得工资薪金、连续性劳务报酬所得的个人，以及取得个体工商户生产经营所得、对企事业单位的承包承租经营所得的个体工商户业主、个人独资企业投资者、合伙企业自然人合伙人和承包承租经营者，其工资薪金、连续性劳务报酬的个人所得税扣缴单位，或者个体工商户、承包承租单位、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的实际经营地均位于试点地区内。  　　取得连续性劳务报酬所得，是指纳税人连续6个月以上（含6个月）为同一单位提供劳务而取得的所得。  　　（四）试点期间个人商业养老资金账户和信息平台。  　　1.个人商业养老资金账户是由纳税人指定的、用于归集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缴费、收益以及资金领取等的商业银行个人专用账户。该账户封闭运行，与居民身份证件绑定，具有唯一性。  　　2.试点期间使用中国保险信息技术管理有限责任公司建立的信息平台（以下简称“中保信平台”）。个人商业养老资金账户在中保信平台进行登记，校验其唯一性。个人商业养老资金账户变更银行须经中保信平台校验后，进行账户结转，每年允许结转一次。中保信平台与税务系统、商业保险机构和商业银行对接，提供账户管理、信息查询、税务稽核、外部监管等基础性服务。  　　（五）试点期间商业养老保险产品及管理。  　　个人商业养老保险产品按稳健型产品为主、风险型产品为辅的原则选择，采取名录方式确定。试点期间的产品是指由保险公司开发，符合“收益稳健、长期锁定、终身领取、精算平衡”原则，满足参保人对养老账户资金安全性、收益性和长期性管理要求的商业养老保险产品。具体商业养老保险产品指引由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提出，商财政部、人社部、税务总局后发布。  　　（六）试点期间税收征管。  　　1.关于缴费税前扣除。个人购买符合规定的商业养老保险产品、享受递延纳税优惠时，以中保信平台出具的税延养老扣除凭证为扣税凭据。取得工资、薪金所得和连续性劳务报酬所得的个人，应及时将相关凭证提供给扣缴单位。扣缴单位应按照本通知有关要求，认真落实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试点政策，为纳税人办理税前扣除有关事项。  　　个人在试点地区范围内从两处或者两处以上取得所得的，只能选择在其中一处享受试点政策。  　　2.关于领取商业养老金时的税款征收。个人按规定领取商业养老金时，由保险公司代扣代缴其应缴的个人所得税。  　　二、试点期间其他相关准备工作  　　试点期间，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证监会做好相关准备工作，完善养老账户管理制度，制定银行、公募基金类产品指引等相关规定，指导相关金融机构产品开发。做好中国证券登记结算有限责任公司信息平台（以下简称“中登公司平台”）与商业银行、税务等信息系统的对接准备工作。同时，由人社部、财政部牵头，联合税务总局、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证监会等单位，共同研究建立第三支柱制度和管理服务信息平台。  　　试点结束后，根据试点情况，结合养老保险第三支柱制度建设的有关情况，有序扩大参与的金融机构和产品范围，将公募基金等产品纳入个人商业养老账户投资范围，相应将中登公司平台作为信息平台，与中保信平台同步运行。第三支柱制度和管理服务信息平台建成以后，中登公司平台、中保信平台与第三支柱制度和管理服务信息平台对接，实现养老保险第三支柱宏观监管。  　　三、部门协作  　　（一）信息平台应向税务机关提供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有关信息，并配合税务机关做好相关税收征管工作。  　　（二）保险公司在销售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产品时，应为购买商业养老保险产品的个人开具发票和保单凭证，载明产品名称及缴费金额等信息。保险公司与信息平台实时对接，保证信息真实准确。  　　（三）试点地区财政、人社、税务、金融监管等相关部门应各司其职，密切配合，认真组织落实本通知，并及时总结、动态评估试点经验。对实施过程中遇到的困难和问题，及时向财政部、人社部、税务总局和金融监管部门反映。  　　 财政部  税务总局  人力资源社会保障部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证监会  　　 2018年4月2日 |